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57호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임실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을 대상으로 회의 수장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임실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 회원 중 군수, 읍·면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회의수당 지급 조항 신설(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9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수당의 지급) 새마을 회원 중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5조(수당의 지급) 새마을 회원 중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집하 는 회의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 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제5조·제6조 (생 략)</u></p>	<p><u>제6조·제7조 (현행 제5조 및 제6 조와 같음)</u></p>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